

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 국지도60호선 먹음교 재가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위치	과업량	용역 기초금액(원)			용역기간
			계	추정가격	부가세	
국지도60호선 먹음교 재가설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합천군 가회면 덕촌리 일원	페아스콘 395ton, 페콘크리트 749ton 운반 및 처리	60,000,000	54,545,455	5,454,545	착수일로 부터 180일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8. 28.(금)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9. 3.(목)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목) 11:00 우리사업소 입찰담당공무원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 생략합니다.

6. 견적서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2.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②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페아스팔트콘크리트, 페콘크리트**인 업체

③ 위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방으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견적서 제출 안내일로부터 제출 마감일시까지 우리 사업소(진주지소)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는 계약관련 법령, 수의계약 운영요령,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같음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우리 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사업소(진주시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바.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서부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관리담당(254-4244), 설계 및 기술에 관한 사항은 관리과 시설관리담당(254-42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8월 27일

경상남도서부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서부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